조달청

혁신제품

내 삶을 바꾸는 혁신제품, 정부가 먼저 구매합니다

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매뉴얼

신규 업체용

혁신시제품 지정신청

2023.04.

목차

1.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

2. 사전 절차

①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등록

② 물품식별번호 등록

3. 온라인 신청

①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

②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

③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
④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

4. 혁신성평가 결과 조회 및 추가서류 제출

① 혁신성평가 심사 결과 조회

② 혁신성평가 합격업체 추가 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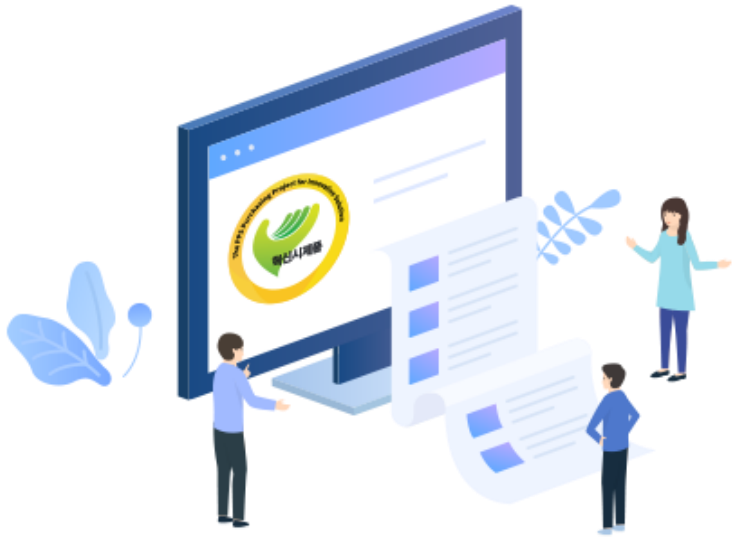

1.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

사전 절차	혁신시제품 지정 절차

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→ 상품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 등록 → 혁신장터 온라인 신청 → 공공성 ·혁신성 평가 → (1차 합격) 추가서류제출 심의 → (최종 합격) 혁신장터 제품 등록

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
- 세부물품 분류번호 제조 등록
- 물품식별번호 등록

-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및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- 공공성·혁신성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(공공수요 발굴 위원회) 진행
- 최종합격 시 혁신장터 제품 등록, 시범구매 등에 참여 가능

2. 사전 절차

2-1.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

2-2. 물품식별번호 등록

조달청

2-1.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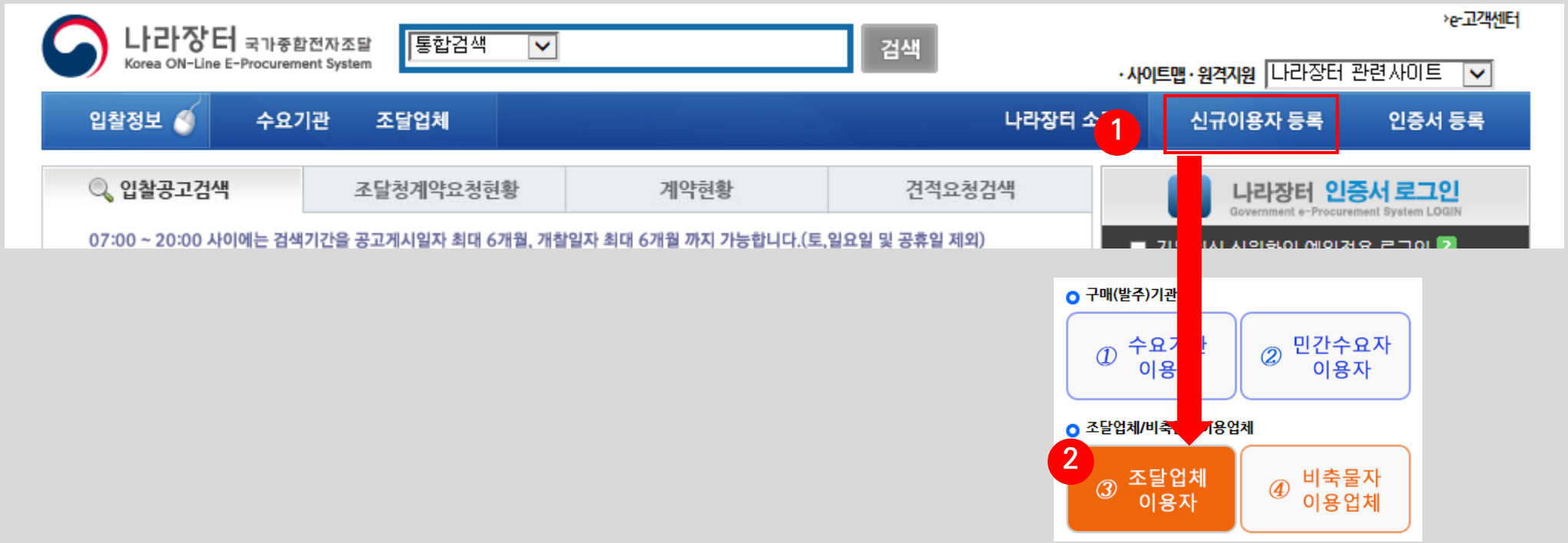

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혁신장터 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. (나라장터 http://www.g2b.go.kr)
입찰참가자격 등록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. ☏1588-0800

① 신규이용자 등록 클릭 → ② 조달업체 이용자 클릭 →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

2-2. 물품식별번호 등록 ①

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분류번호(물품식별번호)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.

※물품식별번호 없이도 지정신청은 가능. 단, 혁신성평가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신청과 병행하여 등록 필요

목록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://www.g2b.go.kr:8053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①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→ ②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내용 확인 → ③ 목록화 요청 주요서비스 →

④ 품목등록 클릭해서 식별번호를 신청

2-2. 물품식별번호 등록 ②

주요 연락처 안내

- **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: 조달콜센터 (1588-0800), 조달청 등록팀 (070-4056-7507,7189,7162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)**
- **세부물품분류번호 부여, 물품식별번호 부여 관련 : 조달콜센터 (1588-0800), 물품관리과 (070-4056-6463, 7182, 7271, 7257)**
- 혁신장터 상품등록 관련 (070-4056-7672)
- 혁신장터 시스템 관련 (042-724-0598, 0593, 0595)

〈〈신청 시 유의사항〉〉

① 세부물품분류번호 제조등록

-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세부물품분류번호는 반드시 제조로 되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신청 가능
  (기술만 있고 제조 공장이 없는 추진기업(신청업체)인 경우 협업으로 신청 가능 – 공고서 '신청자격' 참고)
- 신청하려는 제품이 시스템 등 여러 품목이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해야 함 (제품과 서비스가 함께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)
  ※ 품명등록 과정 중 융·복합품명 등록하는 경우(물품관리과 070-4056-6399), 비고란에 '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'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.

② 물품식별번호 등록

-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하신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신청 상품과 일치해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.
  ※ 품목등록 과정 중 활용구분에 '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'으로 선택
- 단, 신청하려는 제품의 식별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는 해당 식별번호를 활용하여 지정신청 진행

③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못 받은 경우

- 혁신성 평가 통과 후 2차 서류 제출시까지 제안 제품(세부품명번호 10자리)에 대한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.
  ※ 접수 시 물품식별번호 신청 중이라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매뉴얼 P18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.

3. 온라인 신청

3-1.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/ 로그인

3-2.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
3-4.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

조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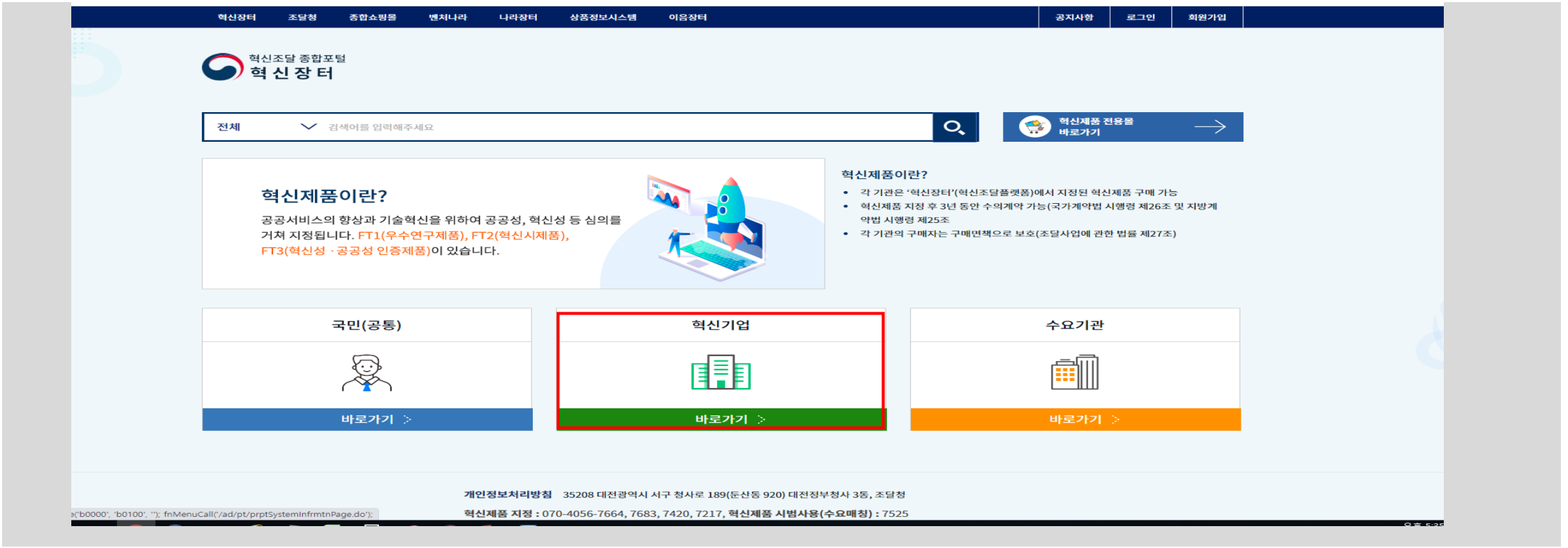

혁신장터 사이트 http://ppi.g2b.go.kr:8914로 접속해주세요.
하단의 '혁신기업(바로가기)'화면 클릭해 주세요.

3-1.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/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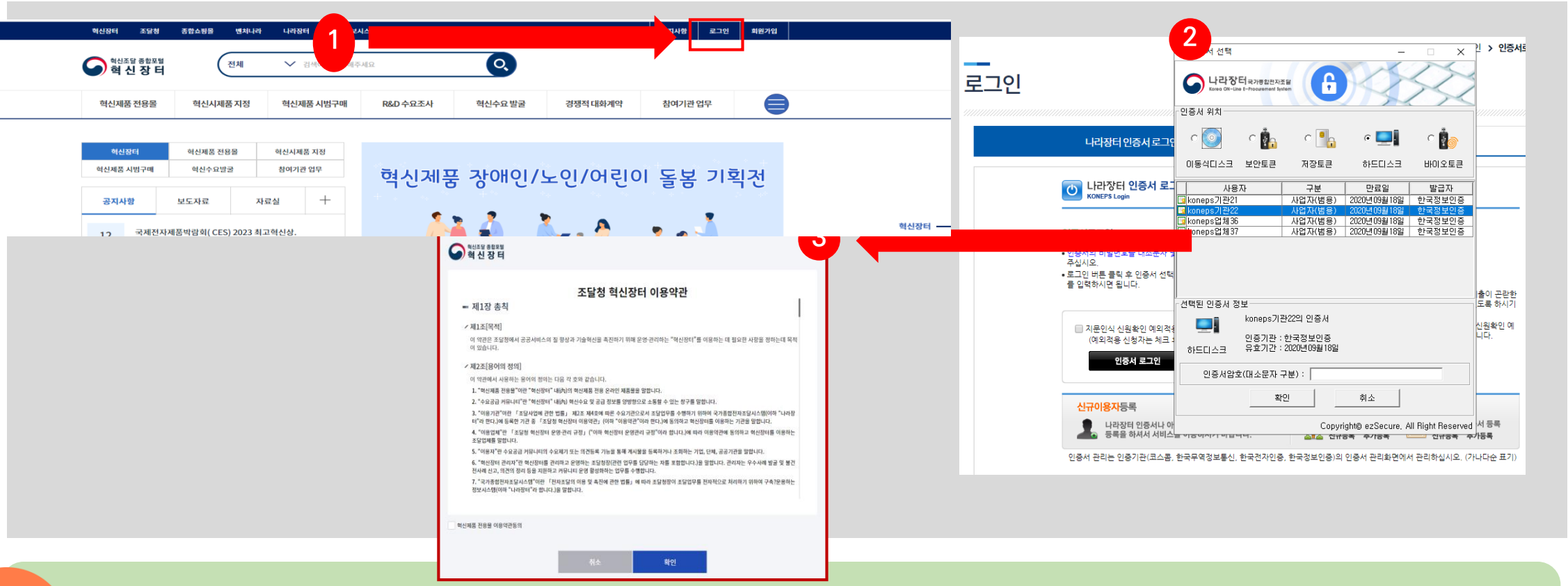

혁신장터 사이트 http://ppi.g2b.go.kr:8914로 접속해주세요.
인증서 로그인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(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)로 가능합니다.

① 상단 로그인 클릭 → ② 인증서 로그인 클릭 → ③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시 등록한 인증서 선택 로그인
→ ④ 이용약관 동의 (별도 회원 가입 절차는 없으나, 이용업체는 최초 방문 시 이용약관에 동의가 필요)

3-2.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①

혁신장터에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.
상단 메뉴’혁신시제품 지정’을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① 상단의 ‘혁신시제품 지정’ 메뉴로 커서 이동 → ② 4번째 [업체]지정 신청 공고 클릭 →
진행 중인 공고 제목 클릭, 세부내용 확인

3-2.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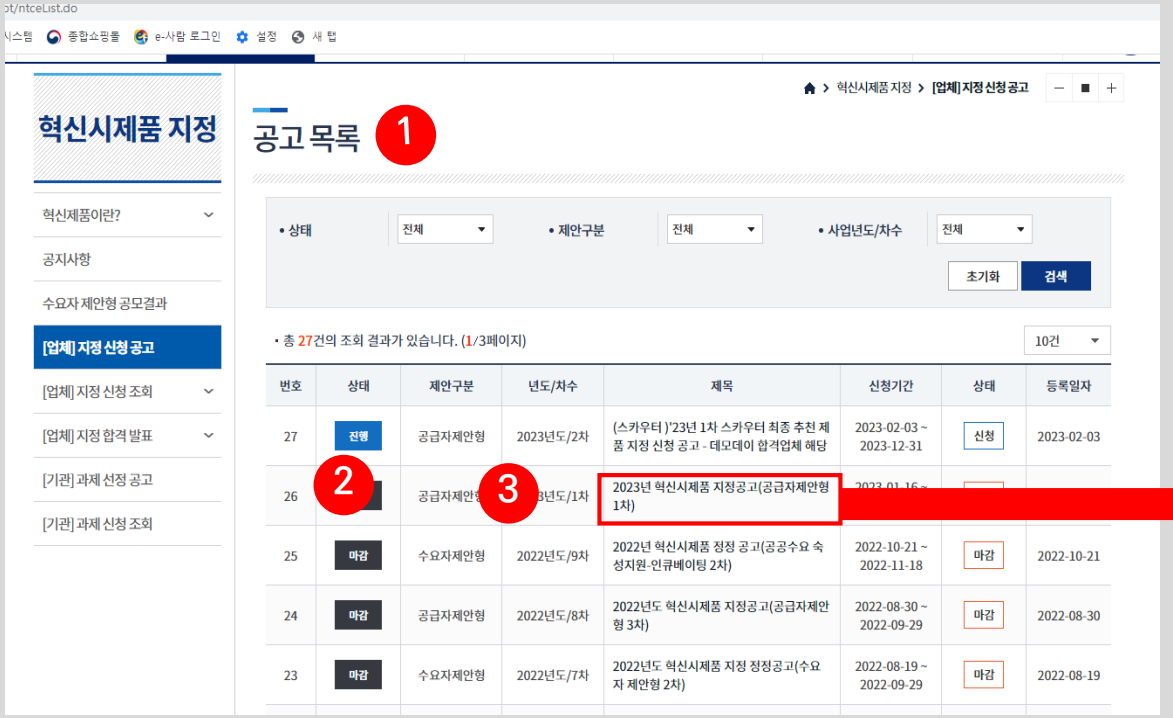

공고목록의 상태 및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.
상태가 "마감"으로 표시되는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①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 목록 → ② 공고 상태 확인 → ③ 제목 클릭 →

④ 공고 내용 확인 (지정공고 및 매뉴얼 확인 필수) → ⑤ 신청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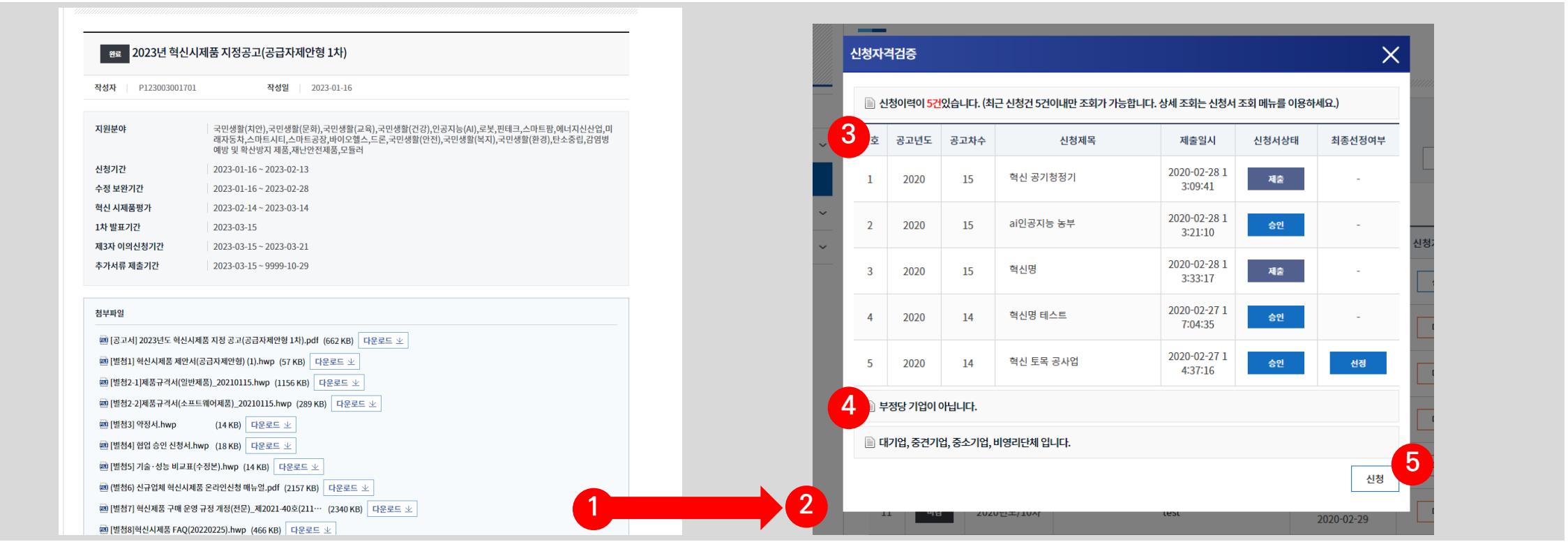

이미 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물품,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제품(식별번호 기준) 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기존 신청 이력을 확인해주세요. 동일제품(물품식별번호)으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탈락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('21.1.1.부터 시행/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17조 7호)

① 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 클릭 → ② 신청자격검증 팝업 오픈 → ③ 과거 신청이력 확인 → ④ 기업정보 확인 (수정은 나라장터 통해 가능) → ⑤ 신청 버튼 클릭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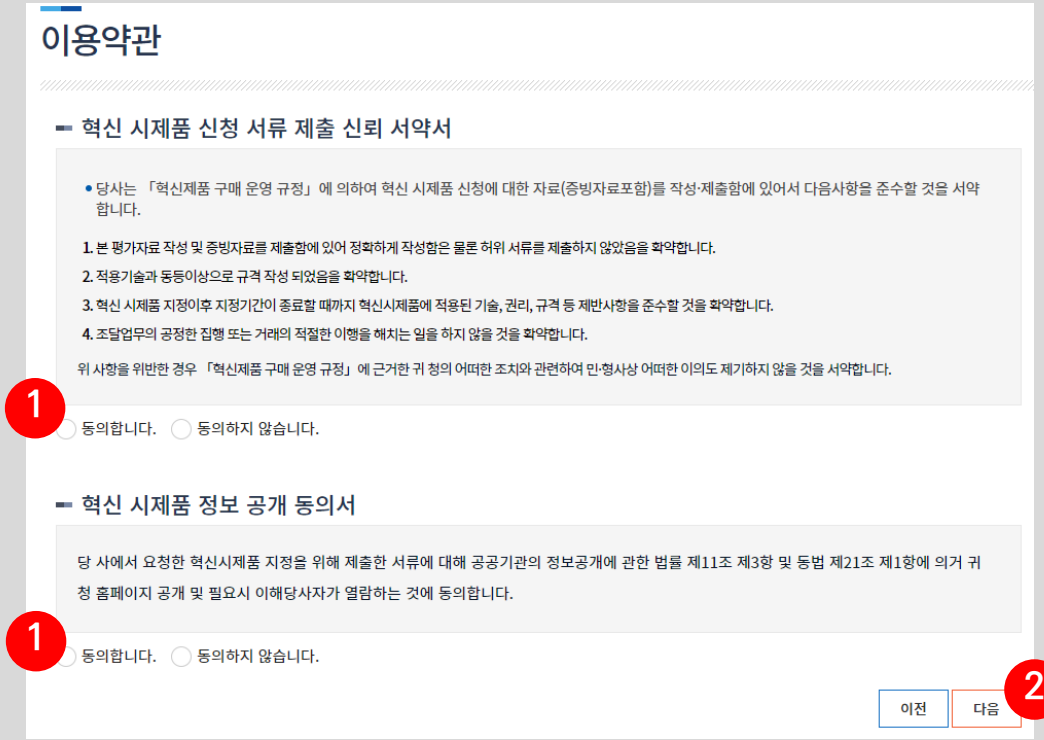

이용약관에 동의는 필수과정으로 ‘동의합니다’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③

신청서 등록

신청기업정보

1 신청기업	업체명(국문)	e발주추가1	사업자 등록번호	9992199995
	업체명(영문)	aaa	업종/업태	토목공사업
	주소(본사)	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aaa		
	주소(공장)	-		
	기업형태	1		
	대표자	외국인	홈페이지	1111111
	전화	111-1111-1111	내외국인구분	-
	휴대전화	010-0000-0000	여성기업구분	
2 연구개발조직	* 구분	◉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○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○ 실험실 형태 조직 ○ 외부기관 의뢰·활용 ○ 기타(공인 기업부설연구소)		

기술인력수(명)	전문학사	학사	석사	박사(기술사)	기타	계
	0	0	0	0	0	0

3 * 사업영역	해당 업체의 주력 분야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업에 입력된 신청기업정보 및 사업담당자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입니다.
해당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신청기업 내용 확인 → ② 연구 개발 조직 현황 기재 → ③ 사업영역 작성 (해당 업체의 주력 분야 기재)

※ 사업영역 예시 : 미세먼지, 드론, 핀테크 분야 등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④

1 업체의 해당년도 전체 매출 규모	구분	전전 연도(2년전)	직년 년도(1년전)	당해 연도	최근 3년(합)
	매출액(백만원)	0	0	0	0
2 사업담당자	성명	업체담당자1	E-mail	a@g2b.go.kr	
	연락처 (유선)	042-481-1111	연락처 (휴대전화)	010-111-2222	

* 업체정보, 업체대표자정보, 업체담당자정보 수정은 나라장터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업체의 해당년도 전체 매출 규모는 해당년도 모든 매출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. (신청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추후 작성).
신청기업정보는 [별지13] 제안서 양식의 3P 신청자 정보 요약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서류 승인이 됩니다.

① 업체의 해당년도 전체 매출 규모 (해당년도 모든 매출 정보) → ② 사업담당자 정보 확인 (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오므로 혁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로 변경필요. 추후 서류 보완 요청 등 업무 진행 시 해당 연락처로 연락)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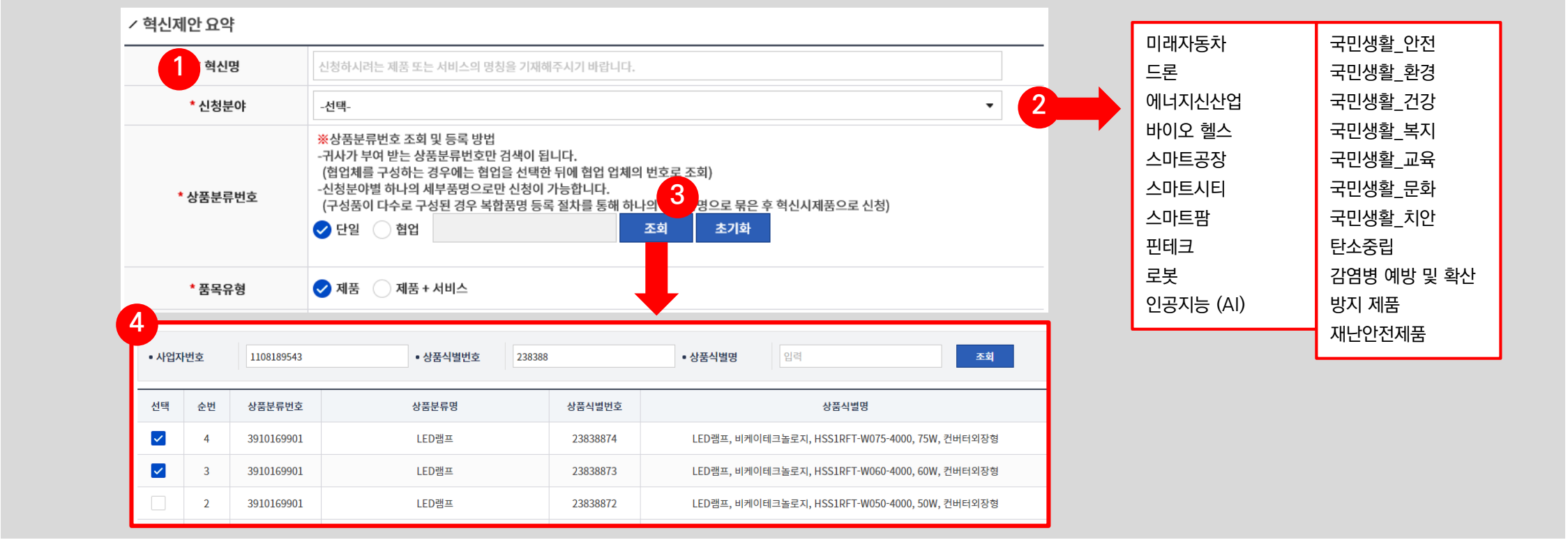

이미 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물품,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제품(식별번호 기준) 인 경우, 동일 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탈락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 (심사대상에서 제외 –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7조 제 4호, 제 6호, 제7호)

식별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식별번호를 검색, 체크해 신청해야 합니다. (사업자 번호+식별번호 앞2자리로 조회)

① 신청 제품명 작성 → ② 신청 분야 선택 (분야 중 1개만 선택 가능, 업체가 직접 선택) → ③ 단일(단독) 또는 협업 체크 후 조회 버튼 클릭 → ④ 사업자번호 또는 상품식별번호로 조회 (MAS, 우수조달물품인 식별번호의 경우 체크 안 됨)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⑤

상품분류번호 조회 및 등록 방법

- 본인이 부여 받은 상품분류번호만 검색되며, 신청 분야별 1개의 세부품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제품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, 복합 품명 등록 절차를 통해 1개의 세부품명으로 묶은 후 혁신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.

※ 세부물품분류번호 부여, 물품식별번호 부여 관련 : **조달콜센터 (1588-0800), 물품관리과 (070-4056-7271, 7257, 6463)**

- 상품분류번호 조회할 때 다수의 식별번호 검색하려면 사업자번호 10자리 + 식별번호 8자리 중 앞에 2자리 입력해 검색하면 해당 되는 식별번호 모두 검색 가능

Q. 식별번호 부여 전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?!

① 지정신청과 병행하여 제안제품(세부품명 10자리)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필요

※ 물품식별번호 등록 후 신청이 원칙이나, 미등록업체도 신청은 가능 (단,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평가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움)

※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제안 제품(세부품명번호 10자리) 에 대한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.

※ 접수 시 물품식별번호 신청 중이라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아래를 참고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② 협업으로 진행 시 참여기업의 사업자번호와 식별번호로 검색 가능하며, 검색이 안 되는 경우 ③의 식별번호 등록 전 방법으로 신청 가능

③ 물품식별번호 등록 전이라면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다!

※ 협업 체크 → 사업자번호 (9992111199), 상품식별번호 (23197254) 입력 후 조회 → 기타미분류가구 체크 →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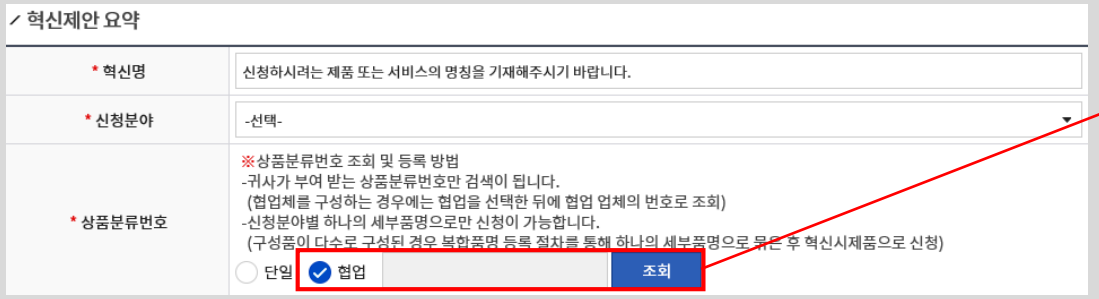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⑥

적용기술에 해당하는 코드분류는 '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'의 산업기술분류표(별표 3)의 양식을 참고해 선택해주세요.
구매운영규정은 혁신장터 지정 공고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첨부자료 중 별첨7)

① 품목유형 선택 → ② 적용기술 조회 → ③ 혁신개요 작성 → ④ 활동분야 작성 → ⑤ 예상 수요기관 작성

※ 예상 수요기관 : 제안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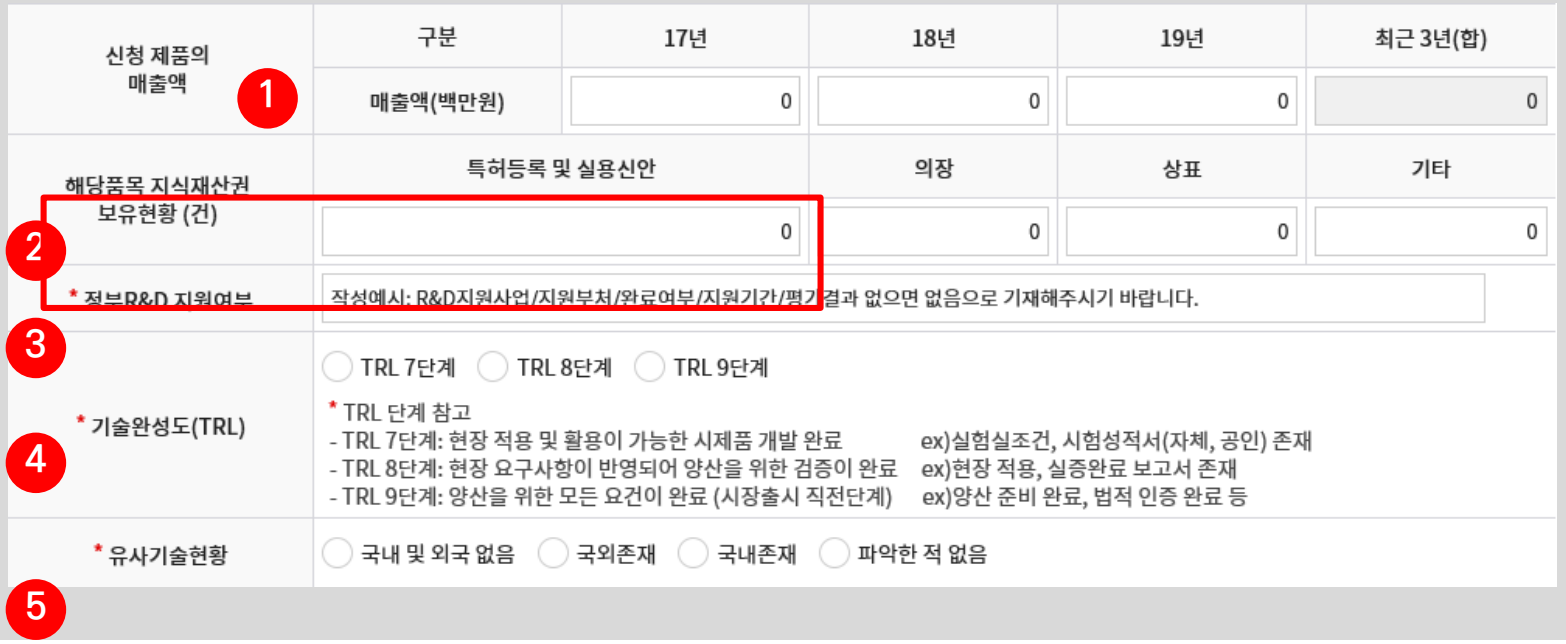

신청 제품의 매출액 ①	구분	17년	18년	19년	최근 3년(합)
	매출액(백만원)	0	0	0	0
해당품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(건) ②	특허등록 및 실용신안	의장	상표	기타	
	0	0	0	0	
* 정부R&D 지원여부 ③	작성예시: R&D지원사업/지원부처/완료여부/지원기간/평가결과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				
* 기술완성도(TRL) ④	○ TRL 7단계 ○ TRL 8단계 ○ TRL 9단계 * TRL 단계 참고 - TRL 7단계: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ex)실험실조건, 시험성적서(자체, 공인) 존재 - TRL 8단계: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ex)현장 적용,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- TRL 9단계: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 (시장출시 직전단계) ex)양산 준비 완료, 법적 인증 완료 등				
* 유사기술현황 ⑤	○ 국내 및 외국 없음 ○ 국외존재 ○ 국내존재 ○ 파악한 적 없음				

신청제품 매출액 : 신청제품매출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제안서 양식 (4p) 제안품목 매출액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서류 승인 가능합니다.

정부 R&D 지원여부 입력 예시 : R&D 지원 사업명 / 지원 부처 / 완료 여부 / 지원 기간 / 평가 결과

정부 R&D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'없음'으로 기재해주세요.

① 신청 제품의 매출액 작성 → ② 신청제품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(하단의 특허검증 단계 통해 자동입력됨 – 21p 확인)

→ ③ 정부 R&D 지원 있는 경우 작성 → ④ 기술 완성도 체크(예시 확인 후 직접 선택) → ⑤ 유사기술현황 체크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⑧

신청제품이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(임시허가, 실증특례)를 통과한 경우,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부 R&D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'없음'으로 기재해주세요.

① 규제샌드박스인 경우 작성→ ② 특허, 실용신안 등록번호 검증 (관련 서류 일체 파일첨부 – 22~23p 참고) → ③ 제안서 작성 및 첨부 (※ 제안서의 '혁신성-제품탁월성-적용기술'에서 **핵심기술은 1개 이상 적용**하여야 함.) → ④ 규격서 작성 및 첨부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⑦

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작성 방법

- 특허 등록 및 실용신안은 신청서 하단 **혁신제안 첨부파일에서 특허 검증을 통해 자동 입력** 됩니다. (수동 입력 불가)
- 검증은 해당 등록번호와 권리권자 입력 후 검증 버튼을 눌러야 하며 1건 씩만 등록 가능합니다.
- 추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해 적용된 것만 입력해주세요.

※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만 **특허(실용실안) 출원 등록 가능**

Q.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은 이렇게 해요 !

① 등록번호, 권리자명 입력 → ② 검증 버튼 클릭 → ③ 검증 완료 알림 확인(다음페이지에 안내) → ④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에 자동 기재 → ⑤ 확인 → ⑥ 검증 받은 내용에 대한 등록증 파일 첨부 → ⑦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여러 개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 등록 및 첨부파일 업로드 가능

※ 검증버튼을 눌러 확인한 특허, 실용신안 수와 첨부파일의 숫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

※ 특허인 경우 특허증, 등록원부, 등록공보 모두, 실용신안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모두 를 **1개 zip 파일로 압축**해 첨부

※ 공동 권리자로 인한 추가 서류는 해당 특허 파일과 같이 압축하여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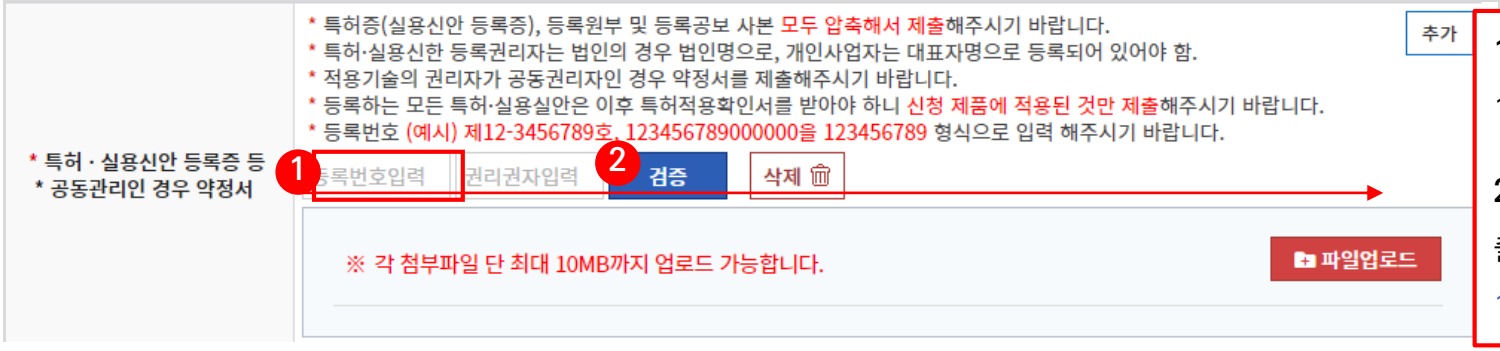

1. 특허 등록번호 입력

10-123456 인 경우, 10123456 으로만 입력

2. 실용신안 등록번호 입력

출원번호 10-2020-9876543 인 경우,

109876543 으로 입력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⑧

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작성 방법

- 특허 등록 및 실용신안은 신청서 하단 **혁신제안 첨부파일에서 특허 검증을 통해 자동 입력** 됩니다. (수동 입력 불가)
- 검증은 해당 등록번호와 권리권자 입력 후 검증 버튼을 눌러야 하며 1건씩만 등록 가능합니다.
- 추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만 입력해주세요.

※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만 **특허(실용실안) 출원 등록 가능**

Q.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번호 검증 메시지

※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번호 입력 후 화면의 검증 버튼 클릭 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노출됩니다.
메시지 확인 후 파일 첨부 및 오류를 확인해주세요.

1) 검증 완료 시 : 확인되었습니다.
※ 완료 시 특허 등록증 파일(특허증, 특허원부, 특허공보를 zip 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등록)을 첨부해주세요.
2) 이미 등록된 특허번호 :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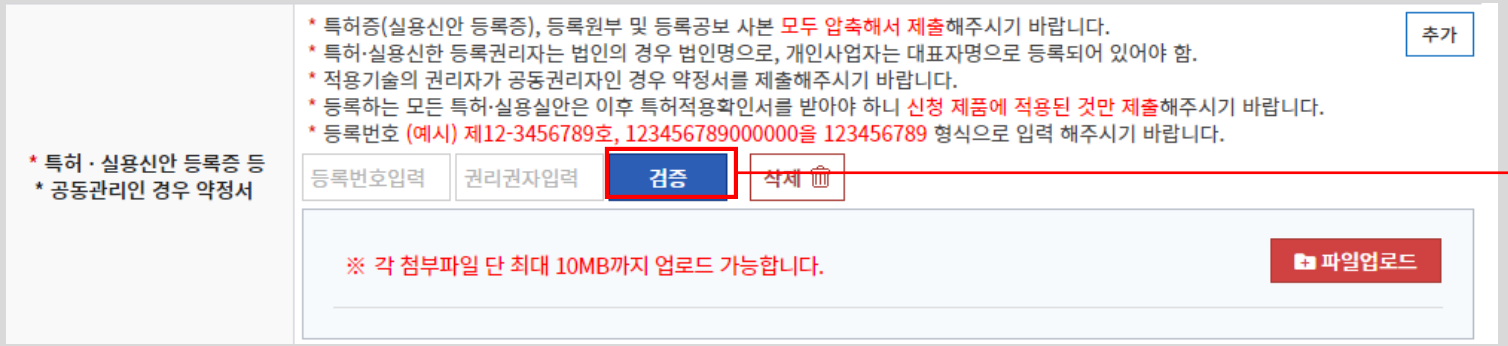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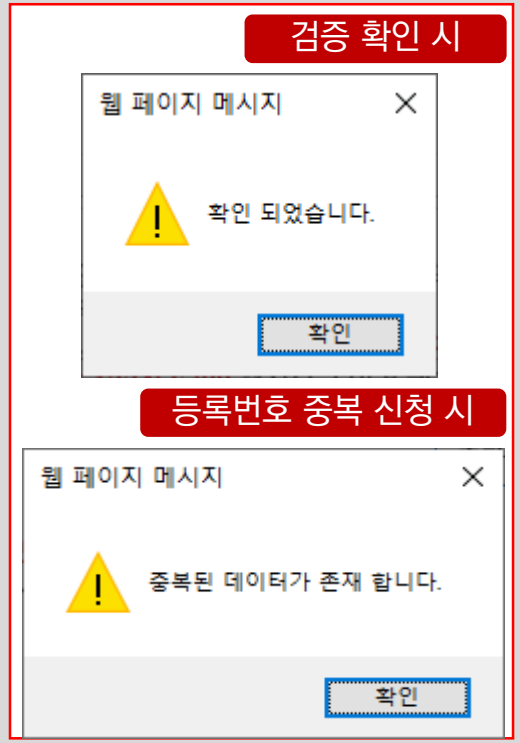

3-3.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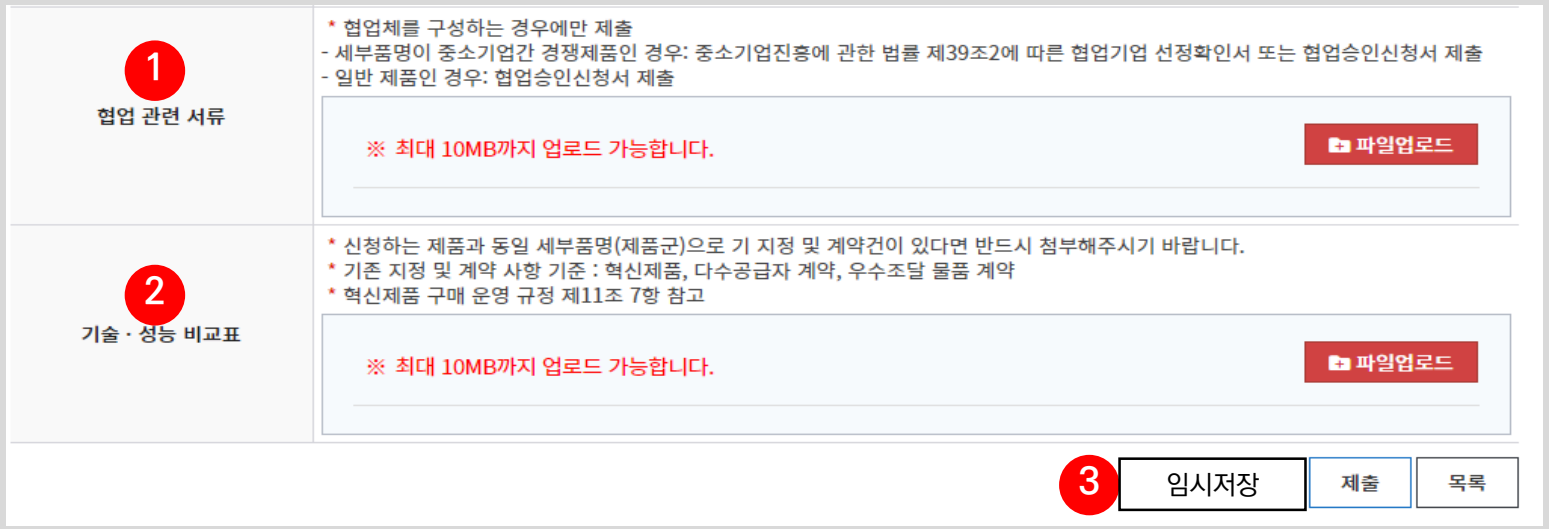

*** 협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 기업 선정 확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.**

*** 기술성능비교표는 이전에 혁신제품, MAS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물품 등으로 계약된 동일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 제출**

① 협업 관련 서류 첨부(협업인 경우) → ② 기술·성능비교표 첨부 **(기술·성능 비교표와 계약 당시 규격서 같이 첨부)** →

③ 내용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(반드시 **지정신청 마감일 6시 이전에 '제출' 버튼으로 제출해야 정상 제출 건으로 인정)**

3-4.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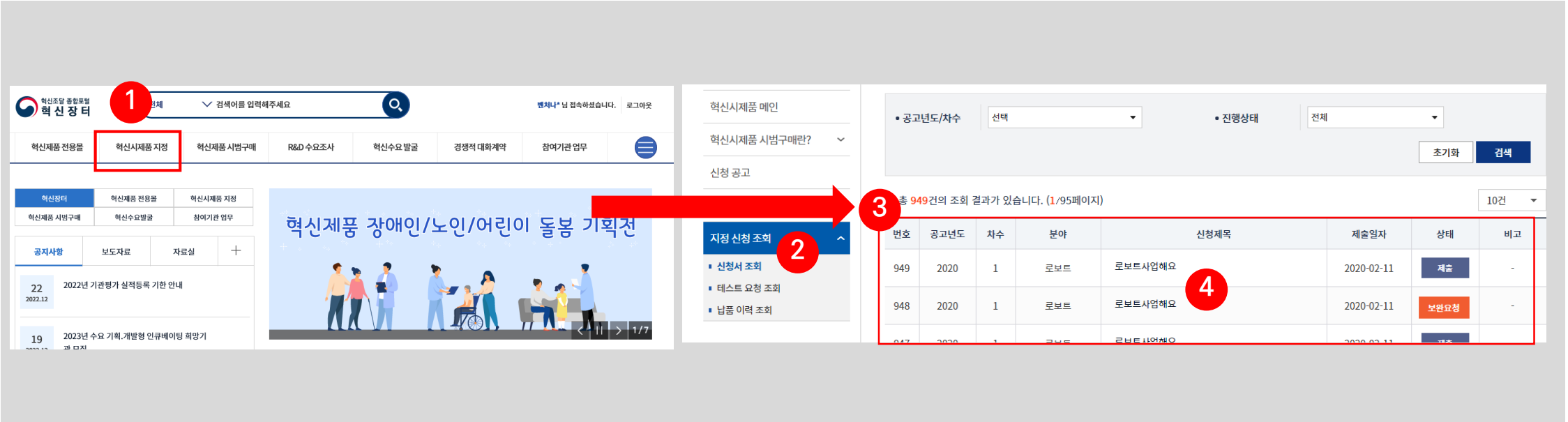

제출된 신청 내역은 혁신시제품 지정 [업체]지정 신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목록의 상태 항목에 진행 상태가 표기되며, 신청 제목을 클릭해 보완 요청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혁신장터 로그인 → 상단의 '혁신시제품 지정' 메뉴 클릭 → ① 왼쪽메뉴의 [업체]지정 신청 조회 – ② 신청서 조회 → ③ 신청 내역 확인 → ④ 제목 클릭 해 신청 내용 상세 확인 가능

3-4.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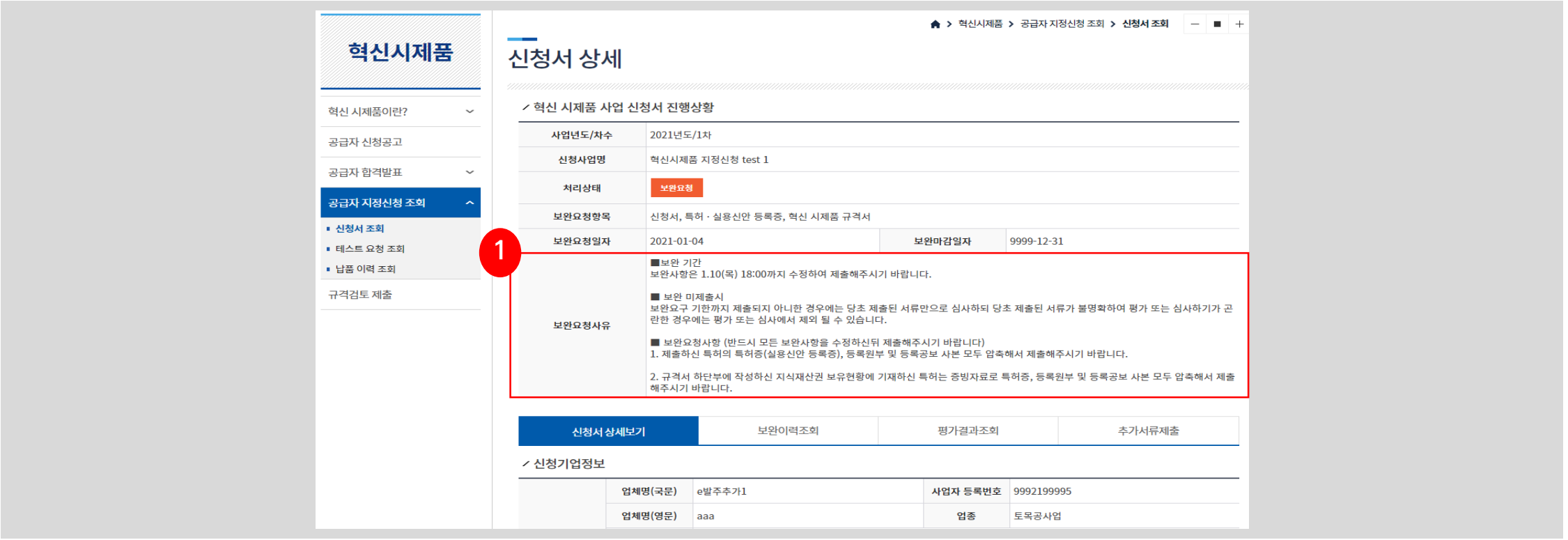

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, 보완 사유를 확인 한 뒤 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.

: 보완 요구 기한까지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.

※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지정신청 조회 → 신청서 조회 → 신청 제목 클릭 → 신청 내역 상세 확인 → ① 보완요청 사유 확인

4.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조회 및 추가서류 제출

4-1. 혁신시제품 평가 심사 결과 조회

4-2.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업체 추가 서류 제출

조달청

4-1. 혁신시제품 평가 심사 결과 조회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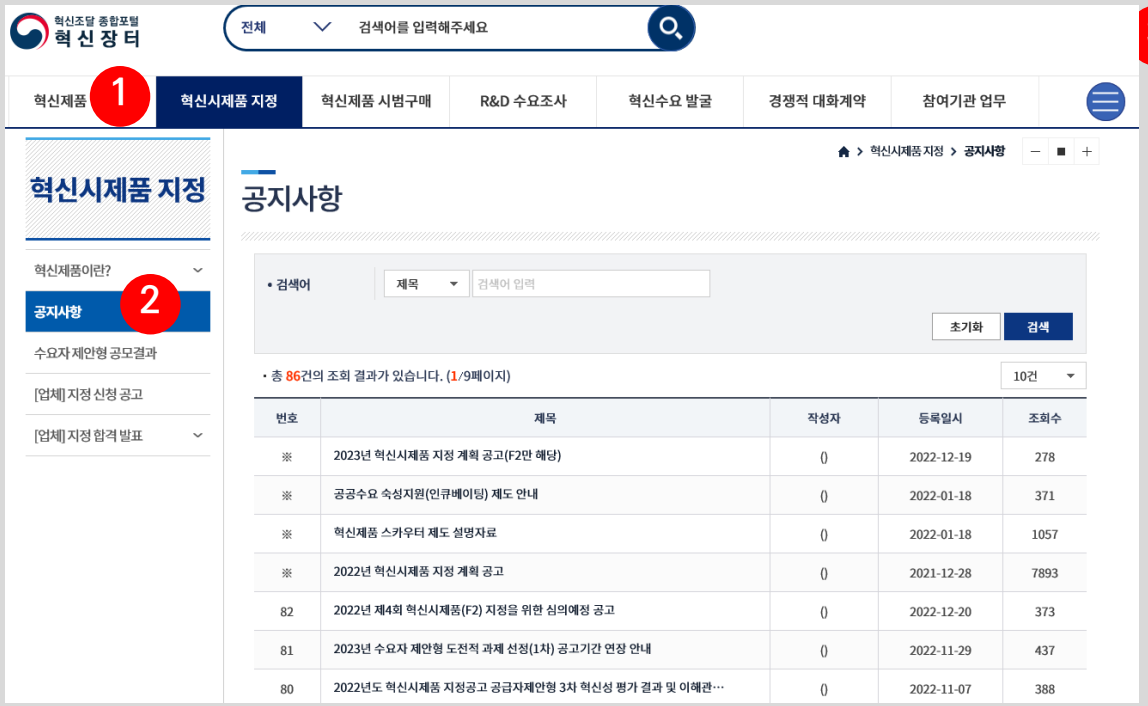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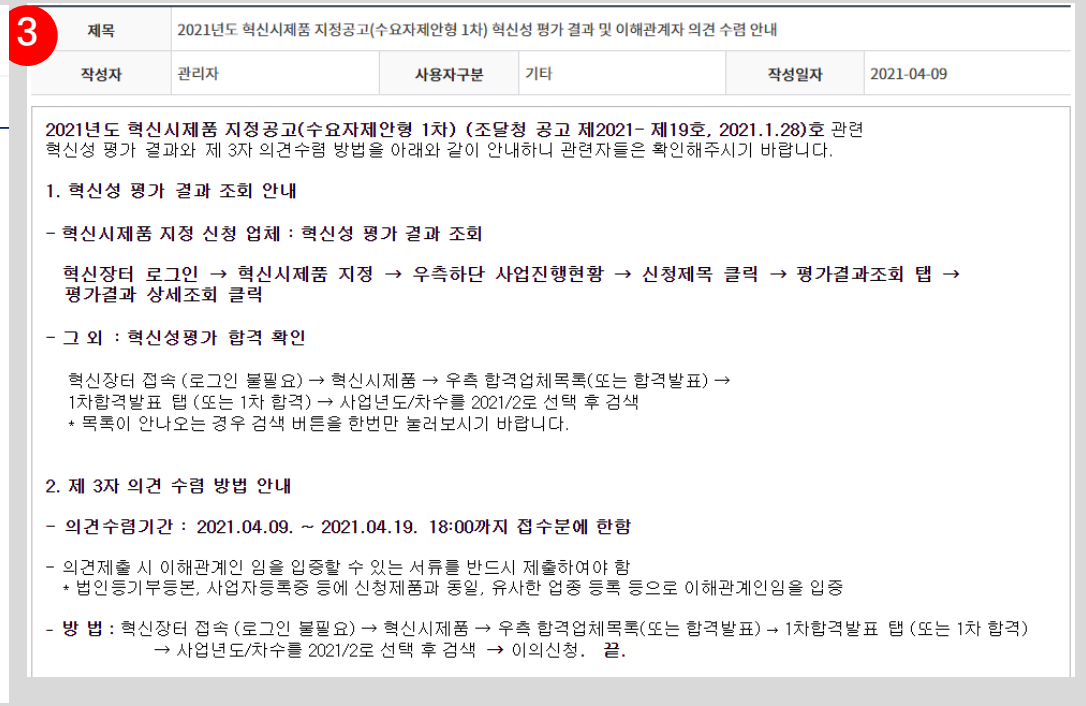

혁신장터 혁신시제품 공지사항에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.
합격업체에 대한 제3자 의견수렴 기간이 고지됩니다.

혁신장터 → ①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 클릭 → ② 공지사항 클릭 → ③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안내 확인 가능 (합격업체 목록 배너 클릭, 1차 합격 여부 확인 가능)

4-1. 혁신시제품 평가 심사 결과 조회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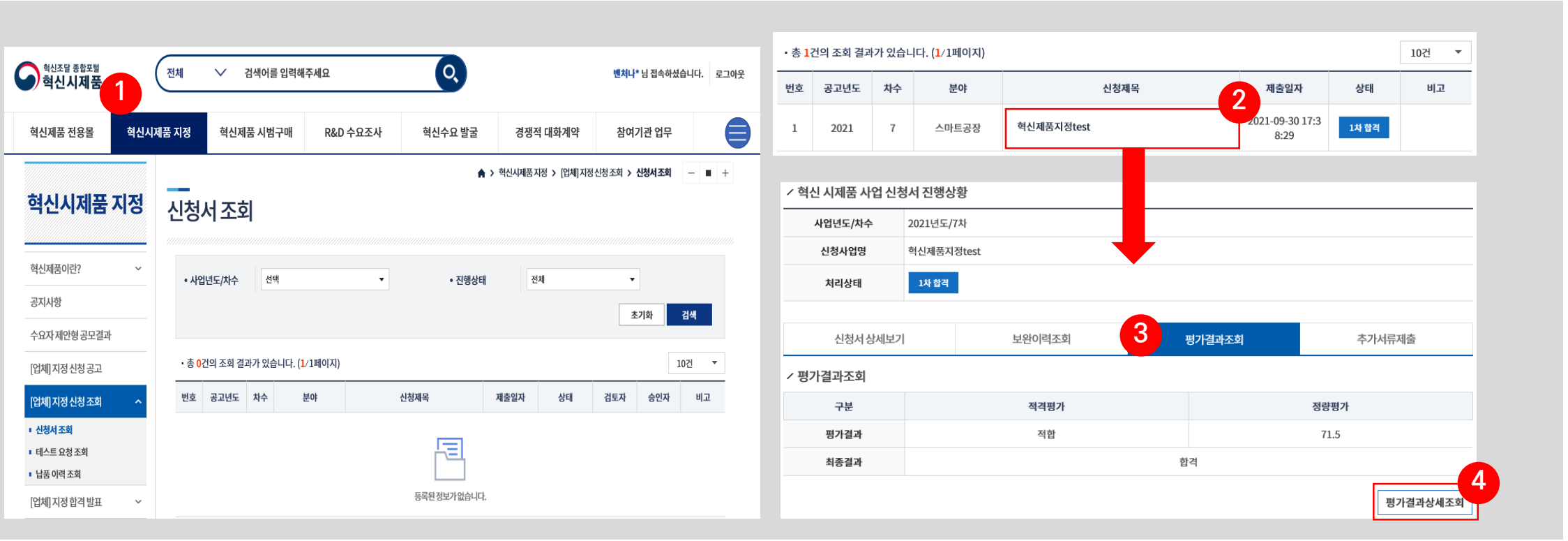

평가결과는 공지사항에 기재된 평가결과 공개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.
공공성 평가에서 떨어진 경우 혁신성 평가 진행 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.(「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」 제14조 제3항 참고)

혁신장터 로그인 →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 클릭 → ① 좌측 지정 신청 조회(신청서 조회) → ② 신청 제목 클릭 → ③ 평가결과조회 탭 클릭 → ④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

4-2.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업체 추가 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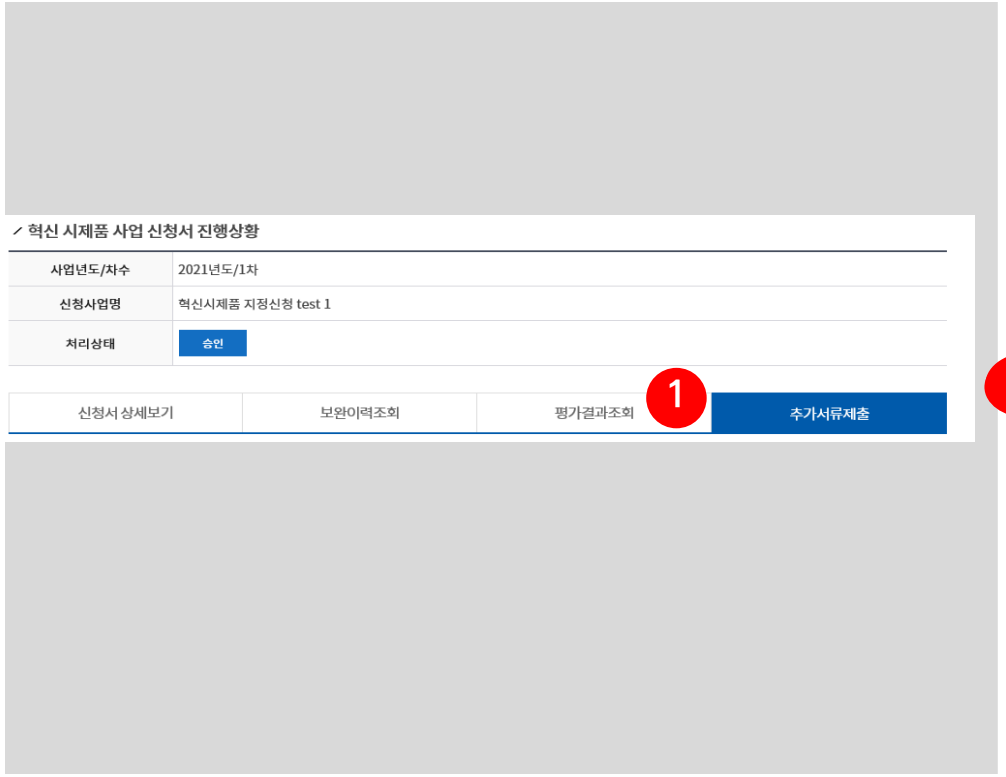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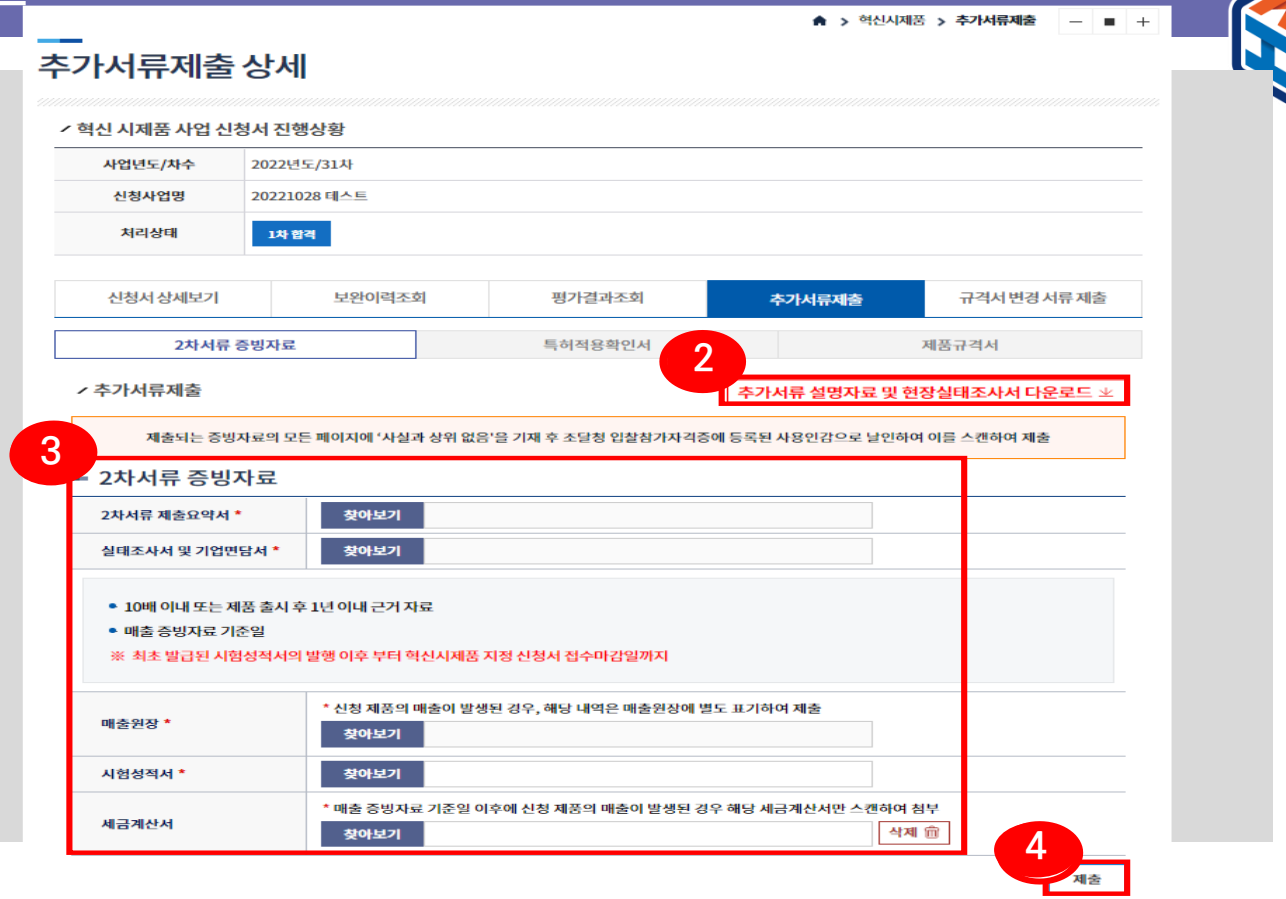

혁신성평가에 합격한 업체는 최종 지정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해당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성평가 합격 업체에게 별도 안내되는 안내문 참고하세요.

① 추가서류제출 클릭 → ② 추가서류 설명자료 및 현장실태조사서 다운로드 → ③ 해당 서류 확인 및 증빙서류 등 작성 및 첨부(단계별 진행 필요 : 2차 서류 증빙자료 제출후, 특허적용확인서, 제품규격서 메뉴도 클릭하여 단계별 첨부) → ④ 제출 버튼 클릭